

서면질문 답변자료

질문의원	신 문 식	소속위원회	산업건설위원회
제 목	도시 환경 개선 제안		

< 질 문 내 용 >

☐ 효율적인 쓰레기 처리방안 시행 촉구

- 1) 일정한 반경(약 500M)마다 간이쓰레기하치장 설치
- 2) 사회적 약자를 고용하여 쓰레기 수거 및 간이쓰레기하치장 관리
- 3) 고용된 공공노동자에게 리어카 및 작업복 제공
- 4) 쓰레기 불법 무단 투기 신고 포상금 제도

〈 답 변 자 료 〉

질문	1. 일정한 반경(약 500M)마다 간이쓰레기하치장 설치
-----------	--

- 일정 반경마다 간이쓰레기하치장 설치관련
-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6조 또는 별표2에 따라 현재 구미시는 쓰레기 수거방식이 문전수거를 원칙으로 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.
- 질문하신 일정한 반경(약500m)마다 간이쓰레기하치장을 설치하자는 것은 거점수거방식으로 현재 재활용품에 적용하고 있는 ※ ‘재활용 동네마당’ 사업으로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대해 22개소에서 일부 적용하고 있습니다.
- 구미시 전체에 일정 반경으로 하치장 또는 분리 배출대를 설치하는 것은 구미시 전체의 생활쓰레기 수거 방식을 다시 편성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.
- ※ 재활용 동네마당이란?
: 3종 분리수거대, CCTV를 설치하여 주민들이 재활용품을 편리하게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설치한 시설

질문	2. 사회적 약자를 고용하여 쓰레기 수거 및 간이쓰레기 하치장 관리 3. 고용된 공공노동자에게 리어카 및 작업복 제공
-----------	--

- 청소가 잘되는 지방자치단체로 벤치마킹하여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3~5곳 선정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.
- 이면도로, 원룸지역 및 상가 밀집지역 등 청소가 안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「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제로 감시단」을 송정동, 형곡동, 상모사곡동, 인동동, 진미동에서 시범운영하여 성과가 좋을 경우 확대·운영할 계획입니다.

- 현재 재활용 동네마당을 운영하면서 구미시니어클럽과 업무협업으로 배출된 재활용품을 분리 및 재정리 작업 시행 중에 있습니다.

질문	4. 쓰레기 불법 무단 투기 신고 포상금 제도
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 구미시 폐기물관리조례 제19조(신고포상금) 내지 제19조의4에 따라 불법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발견 시 읍·면·동사무소에 증거물과 함께 신고 하면 해당 과태료의 50%를 신고인 실명계좌로 지급하며, 1인·1단체에 20만원, 연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.
- 현재 읍·면·동에서 불법 투기, 매립등 2019년 과태료 186건 21,895천원 중 27건 800천원이 신고포상금으로 지급되었습니다.

- 제6조(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등) ①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제작한 종량제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시간·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.
- ② 연탄재, 대형폐기물은 시장이 지정하는 시간·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.
- ③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종량제봉투 판매소(이하 “봉투판매소“라 한다)에서 별표 1의 수수료 기준액에 따라 대형폐기물 처리비 납부 스티커를 구입하여 이를 폐기물에 부착·배출하여야 하며,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납부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.
- ④ 재활용가능 폐기물(이하 “재활용품“이라 한다)은 시장이 정하는 분리 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시간·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.
- ⑨ 시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·운반·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종류별로 수거일, 배출장소, 배출용기, 배출절차 등 재활용품 및 생활쓰레기 배출요령 등을 정할 수 있다.

【별표 2】

재활용품 및 생활쓰레기 배출요령

종 류	품 목	배 출 요 령	배출일(시간)
9. 일 반 생 활 쓰 레 기		- 재활용품, 음식물쓰레기 등이 혼합 되지 않게 하여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넣어 집 앞에 배출 (문전 수거 원칙)	배출일 : 토요일, 공휴일 전날을 제외한 매일 배출시간 : 저녁 7시부터 자정(24:00) 까지

제19조(신고포상금) 시장은 쓰레기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행위 등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 이 경우 신고자의 주민등록지와 소재지를 구미시로 한정한다.

제19조의3(신고포상금의 지급) ①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은 영 제38조의4의 별표 8 중 제2호 개별기준의 가, 나목의 위반행위로 제한된다.<개정 2020.5.13>

② 신고포상 금액은 해당 과태료 금액의 50퍼센트로 하며, 1인·1단체에 월 20만원, 연간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. <개정 2019.7.10>